



“내복입자” 이색 캠페인 자전거사랑전국연합회 광주분부는 23일 오전 극락교 자전거 안내센터에서 ‘제6회 이색 자전거 페스티벌’ 행사를 열고 극락교를 출발, 광주천을 거쳐 충장로에서 겨울철 내복입자 퍼레이드를 펼쳤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올 겨울 포근... 눈 대신 비 잦을 듯

올 겨울 광주·전남지역은 예년에 비해 포근한 날씨가 잦을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3일 ‘2014~2015년 겨울철 기상전망’을 통해 “올해 광주·전남지역의 겨울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다”고 발표했다. 다음달 광주·전남의 기온은 평년(3.9도)보다 비슷하거나 높겠으며 서해안지방에는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동성 고기압과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기온의 변동 폭이 클 것으로 예상돼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추위는 미리 대비가 필요하다.

내년 1월은 남쪽으로부터 따뜻한 기류가 유입돼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하지만, 따뜻한 기류와 차가운 대륙 고기압이 만나면서 눈 또는 비가 내리는 곳도 많겠다. 기온은 평년(-1.5도)보다 높을 확률이 75%로 강수량도 평년(31.3mm)과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이 75%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포근한 날씨가 유난히 많은 탓에 1월 광주·전남지역은 눈이 아닌 비가 내리는 경우도 자주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1월 하순에도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과 남쪽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공기의 유입으로 평균 최고기온 7.6도로 1973년

이후 가장 높은 편차(영상 4도)를 보이기도 했다. 내년 2월에도 이동성 고기압과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으면서 기온 변동의 폭이 큰 날이 잦을 것으로 보인다. 기온과 강수량은 모두 평년(3도·46.4mm)과 비슷할 것이라고 기상청은 예보했다. 특히 기상청은 겨울철 동안 약한 엘니뇨(El Nino)가 유지되면서 동아시아 기압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따뜻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했다. 최근 엘니뇨 감시구역(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

광주·전남 내달 평균 기온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높아

장기간 거래 차명계좌 실소유주 인출권 인정

법원, 계좌 명의자 이의 제기해도 은행 변상 의무 없어

장기간 실질적으로 거래해 온 차명계좌의 실소유주가 예금된 돈을 인출했다면 계좌 명의자가 이의를 제기해도 은행이 이를 변상할 의무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오는 29일 차명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개정 금융실명제법 시행을 앞두고 향후 차명계좌의 소유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잦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법원이 오랜 기간 실질적 거래를 해온 차명계좌주의 인출권한을 인정해준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홍이표 부장판사)는 이모(63)씨가 A은행을 상대로 낸 예금채권 반환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A은행에는 이씨 이름으로 된 계좌가 8개 있었다. 이씨는 자신의 부친이 이들 계좌에서 1억5500만원을 찾아가자 명의자는 자신인데 은행이 허락 없이 부친에게 돈을 인출해줬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은행 측은 해당 계좌에 실제로 돈을 입금하고, 비밀번호와 도장 등을 관

리해온 것은 이씨의 부친이므로 실소유주는 부친으로 볼 수 있다며 맞섰다. 실제로 A은행에 이씨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 서류를 제시하고 이씨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것은 이씨의 부친이었다. 차명계좌인 셈이다. 재판부는 “금융실명제법에 따르면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일반적으로 예금명의자를 계약의 당사자로 봐야 한다”며 “문제가 된 8개 계좌의 계약당사자는 명의자인 이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씨 부친이 민법에서 정한 채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준점유자’에 해당하므로 은행이 돈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봤다. /연합뉴스

광주교통약자이동센터 직원

통상 임금 소송서 승소

산하 기관 항소 잇따를 듯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도 전·현직 직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통상 임금 소송에서 패소한 광주시 산하 공기업 및 유관기관들의 항소 대열에 동참할 전망이다. 광주지방 민사 13부(부장판사 이종재)는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강모(60)씨 등 전·현직 직원 37명이 낸 3억8000만원 상당의 통상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15, 해질 17:22, 물결 08:35, 물결 19:08

겨울비 머금은 노란 은행잎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다. 예상강수량 10~60mm.

Table with weather icons and regional forecasts for various cities like Seoul, Gwangju, and Jeonju.

Table with sea weather forecasts for morning and afternoon, including wind direction and speed.

Table with daily life forecasts for activities like eating, exercise, and laundry.

Table with 7-day weather forecasts for the week starting from 10/14.

장성 효사랑병원 화재 참사 관련

불 지른 70대에 징역 20년 선고

이사는 5년4개월 실형 선고

22명의 목숨을 앗아간 장성 효실천사 랑나눔요양병원(이하 효사랑병원) 방화 참사와 관련, 방화범으로 지목된 7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해당 병원 이사장에게는 병원 인력·환자 관리 등을 소홀하게 한 책임을 물어 징역 5년 4개월을 선고했다. 요양병원 인·허가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함께 기소된 전 광주시 서기관 박모씨와 뇌물 공여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마옥현)는 현존건조물방화죄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82)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화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김씨 주장과 달리, “불이 난 병동 앞 CCTV와 병원 간호사, 김씨 아들 등의 진술 등으로 미뤄 김씨가 불을 낸 게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사장 이모(53)씨에 대해 징역 5년 4개월, 이씨의 행이 행정위원장에 대해서는 금고 2년 6월, 관리과장에 대해서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중증 환자들이 많은 상황을 고려해 적절한 당직인력을 배치하거나 야간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 따른 대비책을 세우는데 미흡했고 소화기를 적절히 배치하지 않는 등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병원 인허가 과정에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함께 기소된 광주시 서기관 박모씨와 뇌물 공여자에 대해서는 “뇌물”이라고 단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가 운영하는 다른 요양병원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증거를 숨길 것을 지시한 광주 한 요양병원 행정위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증거를 은닉한 간호사 2명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매일 24면... 호남 최대 발행부수' with a cup of coffee icon and website link kwangju.co.kr.

Large advertisement for '프리모남녀기발' (Primomo hair products) featuring four models and a price tag of 59,000 won.

Advertisement for '참숯에 구워먹는 소고기전문점' (Bamchar charcoal BBQ restaurant) with menu items and prices.